

##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정 2000. 1.12 법률 제6121호

개정 2006. 3. 3 법률 제7858호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·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,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“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”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·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. (개정 2006. 3. 3)

**제3조(법인격)**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(이하 “지방연구원”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

**제4조(설립 및 등기 등)** ① 특별시·광역시 및 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
4.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
5. 공고의 방법

④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5조(정관)** ①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5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6. 임원·연구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7. 이사회에 관한 사항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9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
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6조(임원 등)**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장 1인 및 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.

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**제7조(임원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원장은 지방연구원을 대표하고 지방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,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.

③ 감사는 지방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

**제8조(임원의 선임)** ①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 (개정 2006. 3. 3)

②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③ 이사(이사장을 제외한다)는 정관에 명시된 자(이하 “당연직이사”라 한다)와 원장이 학계·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9조(임원의 임기)** ① 이사장·원장·이사(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)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현재 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10조(이사회 구성과 기능)**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서 구성한다.

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2.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
3.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4. 지방연구원의 경영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
5. 지방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
6. 기타 지방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11조(이사회 운영)**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2. 감사가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
-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**제12조(자율적 경영의 보장)** ①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.

- ② 원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**제13조(운영재원)** ① 지방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보조금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-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**제14조(수익사업)** 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**제15조(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**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6조(사업연도)** 지방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17조(사업계획 등 승인)**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고, 그 승인을

언어야 한다.

**제18조(결산서 등 제출)**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·도지사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·지출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
2.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(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)
3.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

**제19조(경영평가 등)** ① 시·도지사는 지방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에는 지방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, 연구결과의 활용성, 업무의 능률성,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6. 3. 3]

**제20조(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)** ①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, 연구실적의 상호활용, 공동연구사업 등을 행하기 위하여 당해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계 지방연구원간 지방연구원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은 협의회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6. 3. 3]

**제21조(해산)** 이사회는 당해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연구원의 해산을

결의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.

**제22조(검사 및 감독)** ① 시·도지사는 지방연구원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연구원에 관계서류·장부,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은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비밀엄수)** 지방연구원의 임원·연구원·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와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.

**제24조(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)** 지방연구원의 임원·연구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.

**제25조(준용규정)** 지방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26조(벌칙)**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지방연구원의 설립준비)** ①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

- ② 설립위원회는 지방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설립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(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)는 산업계·연구계·학계 등의 추천으로 시·도지사가 임명한다.
- ④ 설립당시 지방연구원의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(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)의 추천으로 시·도지사가 임명한다.
- ⑤ 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방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-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**제3조(권리·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)**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·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·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의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.

**제4조(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·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의 임·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, 그 임기는 민법 제32조 및 시·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기간을 통산한다.

**제5조(사무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·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원의 사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.

**부 칙**(2006. 3. 3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이사장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)**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.